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227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2276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0118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169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강동시영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피상고인서울특별시

판결 선고2015. 12. 1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나20118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지분 해당 면적 5,076.764㎡가 1979. 2. 24.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암사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원 또는 녹지시설 면적 71,000㎡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주택건설촉진법(1980. 1. 4. 법률 제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 해당 면적에 공원 또는 녹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나,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인허가 의제규정이나 증명책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